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정 상 천

편 집: 문화공보관 심 계 섭

전화 75-7834

인 쇄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제 771 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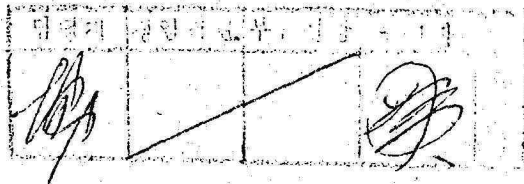
1980. 4. 19

시 보

차 례

◎ 공 고

제 124 호 :	도시계획사업 (하수도및 일부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	3
제 126 호 :	금호대교건설공사시행허가예판한공고	3
제 128 호 :	분묘개장공고	4
제 129 호 :	소방용기계기구제조업소허가취소공고	4
제 132 호 :	토지수용재결 열람공고	5
제 22 호 (종로구공고) :	동장직인개각공고	6

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서울특별시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4 호

도시계획사업 (하수도및일부 도로) 실시계획공람공고

- 1. 서울시 고시 제 123 호 (80.4.9) 로 시설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사업 철산유수지 인입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25 조의 2 규정에 따라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.
- 2.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- 3.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

1980. 4.

서울특별시장

- 공 략 개 요 -

1. 사업장의 위치

기점 : 구로구 가리봉동 42-23

종점 : " " 32-53

2. 사업의 종류와 명칭

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하수도 및 도로)

명칭 : 철산유수지 인입수로 정비공사

3. 사업의 규모

암거 : $3.2^m \times 2.3^m$ - 3연 L = 20.2^m

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장

5. 사업착수 및 준공 : 1980. 4. - 1980. 9. 20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, 건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별첨토지조서 생략

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, 실명 : 별첨토지조서 생략
첨부 : 토지조서 생략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6 호

금호대교건설공사시행 허가에 관한공고

도로법시행령 제 16 조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금호대교 건설공사시행에 관한 허가를 하였기에 공고한다.

1980. 4.

서울특별시장

도로의종류	교 량		노선명	금호대교
공사의종류	교량건설공사			
구 간	자: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68-1 지: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3			
공사시행장소	상 동			
착공예정일	80. 6. 1	준공예정일	83.12.31	
이 유	남광토건(주) 대표 김응세로부터 민자에 의한 금호대교 건설공사 신청에 의함.			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8 호

분묘개장광고

서울특별시 강동구 가락동 산60-4, 5번
지 일대에 기 실시된 분묘에 대하
여 매장 및 묘기등에 관한 법률
제 15 조, 제 16 조 및 동법 시행규칙
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
이 개장할 것을 공고함.

다 음

1. 개장대상분묘: 강동구 가락동
산 60-4, 5번지내 5기
 2. 분묘연고자신고기간: 1980.4.20-
1980.5.20 (1개월간)
 3. 개장기간: 1980.4.20 - 1980.
5.20 (1개월간)
 4. 기 타
- 가. 분묘 연고자는 위 기간내에

강동구청 사회과에 신고하고 개
장 기간내에 개장바라며
나.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
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, 당시에
서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
의거 개장하겠으니 양지하지기 바랍
다.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도로국
도로과 (73-4964) 나 강동구청
기획과 (170-7131) 로 문의하시기
바람.

1980. 4

서울특별시 장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29 호

소방용기계기구제조
업소허가취소공고

소방법 제 37 조제 2 항 및 동법

시행규칙 제 75 조 2 규정에 의거 다음 소방용기계기구 제조업소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처분 하였음을 공고한다.

1980.4.18

서울특별시

업체명	소재지	대표자	허가사항			허가취소사유	허가취소일자
			허가번호	허가일자	품목		
삼성방염공업(주)	동대문구 중화동 110-15	전용태	내무부 허가 제 65 호	74. 9.16	방화액 및 방화도료	소방법 제 37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5 조 2	1980. 4.18
신동방상사(주)	영등포구 도림동 222-1	박성연	내무부 허가 제 17 호	78. 11.23	방화액	규정 위반	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32 호

토지수용제결렬 램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75(79.6.26) 호로 도시계획사업(전기공급 설비) 시행허가된 도봉구 월계동 359-1 번지의 1필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 36 조 및 동법시행령 제 17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2.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토지수용법 제 36 조 2 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3. 관계도서 및 서류는 도봉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다 음

- 가. 사업시행지 - 도봉구 월계동 359-1 의 1 필지
 - 나. 사업의 종류 - 전기공급설비 (154 kw 월계 변전소)
 - 다. 사업시행면적 - 3,911 m² (1,183 평)
 - 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- 중구남산동 3 가 11-5
- 성명 - 한국전력관리본부장 김 차 경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- 허가일로 부터 7일 이내 사. 수용할 토지조서	준공예정일 - 1981. 6.30 바. 공고기간 - 공고일로 부터 14 일간
--	--

위 치	지 번	지 목	지 적	편입면적	소 유 자		관 계 인	
	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
도농구월계동	산 108-13	임	2,896	2,896	동대문구청량 1동235-1 (미주APT 7-401)	고범춘		
"	359-1	잡	904	904	은평구대조동 197-3	허홍열	중구신당동 349-13 성농구지양동 219-24	이부남 김용규

1980. 4.

서울특별시 장

◎ 종로구 공고제 22 호

동장직인개작공고

종로구 평창농장및 종로 4, 5, 6 가

동장의 직인및 계인이 마멸되어 관인
규정제 8 조 및 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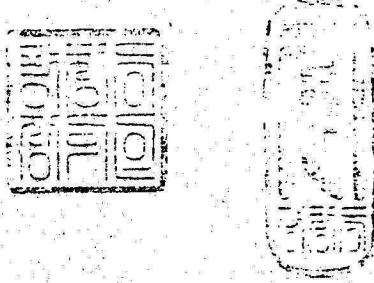
6 조에 의하여 개작하였기 아태와
같이 공고함.

1980.4.

종로구청 장

1. 사용일자: 80.5.1

2. 직인의 인영: 다음

공 인 의 인 영	
구	신
평창농장인 및 계인	평창농장인 및 계인
	
중로 4, 5, 6가동장인 및 계인	중로 4, 5, 6 가동장인 및 계인
